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, 의정부시가족센터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아래 기한 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교섭요구 노동조합	공공&돌봄노동조합
대표자	이양원
교섭요구일	2026. 8. 12.
교섭요구 내용	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
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기한	2026. 8. 18.까지

※ 교섭을 요구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 기한 내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.

공고기간: 2026. 8. 12. ~ 2026. 8. 18. (7일간)

관련근거: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3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3

2026. 8. 12.

의정부시가족센터장

